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7항제7호를 삭제한다.

10.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제39조제2항 중 “2021년 2월 28일”을 “2023년 2월 28일”로 한다.

별표 10 제1호 1)의 평가기간란 중 “2021년 3월 31일”을 “2022년 3월 31일”로 한다.

별표 11 중 “1. 제3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1년 2월 28일)”을 “1. 제39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⑩ (생략) ⑪ 지역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략) <u><신설></u> ⑫ ~ ⑯ (생략) ⑰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6. (생략) <u>7.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u> 8. ~ 13. 삭제 14. ~ 18. (생략) ⑱ (생략)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 -----. 1. ~ 9. (현행과 같음) <u>10.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u> ⑫ ~ ⑯ (현행과 같음) ⑰ ----- -----. 1. ~ 6. (현행과 같음) <u><삭제></u> 14. ~ 18. (현행과 같음) ⑱ (현행과 같음)
제39조(한시정원) ① 삭제 ② 주거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1년 2월 28일까지</u> 별표 11에 따른 한시정원을 보건복지	제39조(한시정원) ② ----- ----- ----- ----- ----- --- <u>2023년 2월 28일</u> --- -----

부에 두며, 별표 11의 정원 1명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 ·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약 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공 업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 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 ⑤ (생략)	----- ----- ----- ----- ----- -----. ③ ~ ⑤ (현행과 같음)
---	---